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홍 근 석\*\*  
임 정 빈\*\*\*

## 국문요약

이 연구는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정부 간 자원분담 방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자원분담체계 중 차등보조율 제도에 관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중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사업이 중요하고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큰 2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와 현황분석 등을 통해 3가지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자원분담체계 내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은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에 대한 현행 차등보조율제도를 폐지하고 기준보조율을 1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경우 국비지원규모가 증가하므로 아동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중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사업을 제외한 10개 사업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현금성 지원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인상하는데 필요한 만큼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차등보조율제도, 국고보조사업,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기준보조율

## I. 서론

문재인 정부는 사회복지 확대<sup>1)</sup>와 함께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과제

\* 이 논문은 홍근석(2020)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 1)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 중 보건복지부 사업비는 51.5조 원으로 총 사업비의 56.9%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비 규모 기준 상위 10개 국고보조사업 중 보건복지부 사업이 8개로 가장 많으며, 이들의 사업비 합계는 41.7조 원으로 총 사업비의 46.0%를 차지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관 8개 사업의 대응지방비는 11.7조 원으로 총 사업비의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기초 간 지방비 부담비율은 58:42로

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이재원 외, 2017). 즉,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중앙-지방 간 역할 및 자원부담 방식에서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부터 지역의 자율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지방재정제도 혁신을 위해 제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편할 계획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를 통해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다양한 정책 영역 중에서 특히 보육을 포함한 아동 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인구감소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 및 아동 관련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보육서비스를 포함하여 돌봄지원사업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향후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재원 외, 2017). 2019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영유아보육료는 4,726,866백만 원이며, 이 중 1,287,223백만 원(27.2%)을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2,965,735백만 원 중 798,312백만 원(26.9%)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중 아동복지 분야(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동복지 분야를 포함하여 현행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자원분담기준 측면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조금법 시행령」의 [별표1]은 121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법 시행령」의 [별표1]은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현재 수행되지 않는 국고보조사업이 포함되거나 새롭게 수행되는 국고보조사업이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법 시행령」의 [별표1]에서는 주로 세부사업 수준에서 기준보조율을 제시하고 있어, 다수의 내역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내역사업별로 실제 보조율이 상이하게 수행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별표1]에 규정된 기준보조율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일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차등보조율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즉, 현재의 차등보조율

나타났다.

- 2)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32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는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으며, 노인인구비율이 청소년인구비율을 초과하는 ‘인구 지진(Age quake)’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비율은 2015년 73.4%에서 2045년 54.3%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노인인구비율은 2015년 12.8%에서 2045년 35.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장경원·홍근석, 2018).

은 재정자주도를 3단계(80% 미만, 80~84%, 85% 이상)로 구분하며, 사회복지비 지수도 3단계(20% 미만, 20~24%, 25% 이상)로 구분하여 차등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을 적용할 때, 인하보조율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반면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인상보조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완(2019) 등 다수의 선행연구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지표가 지역적 분포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를 개선하거나 대체 지표를 적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양적 확대 및 질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세 중심의 재정분권 강화와 연계하여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 간 재원분담체계와 관련하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정부 간 재원분담 방안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체계 중 특히 차등보조율 제도에 관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중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사업의 중요성이 높고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큰 2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안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차등보조율제도의 의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사업수요 등에 따라 지방재정 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심지현, 20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인하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에서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여 적용하는 인상보조율과 일정 비율을 감하여 적용하는 인하보조율을 설명하고 있다.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더하거나 빼어 적용하며,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적용된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차등보조율

의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을 정하고 있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재정자주도와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해당 지역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차등보조율은 대체로 예산규모가 커서 상당한 대응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대규모 보조사업 위주로 적용되며, 대표적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초연금 지급, 생계급여 등의 복지사업이 이에 해당한다(심지현, 2014).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차등보조율 산정을 위하여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수 기준을 사용한다. 재정자주도가 높고(85% 이상) 사회복지비지수가 낮은(20% 미만) 경우 기준보조율보다 10%p 낮은 인하보조율을 적용하며, 반대로 재정자주도가 낮고(80% 미만) 사회복지비지수가 높은(25% 이상) 경우 10%p 인상보조율을 적용한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사업의 경우에는 재정자주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위의 사업들과 동일하나 사회복지비지수 대신 노인인구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과 지방 구분 없이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수에 따라 40~90%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차등보조율은 크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해당 사업의 수요” 2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비지수 또는 노인인구비율 어느 형태이든 “해당 사업의 수요”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어렵거나, 해당 사업의 수요가 클수록 더 높은 국고보조율을 적용받는 구조이다(손인호·금재덕, 2018).

## 2. 차등보조율제도 관련 쟁점

현행 차등보조율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인 재정자주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재정자주도의 하위 구간은 80%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2017년 기준으로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33개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할 때 대부분 인상보조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등보조율 적용 구간들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제도 낭비’ 구역이 된다(이재원, 2019).

또한 재정자주도가 80% 이하이더라도 격차가 나타나는 단체가 모두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로 동일하게 분류되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을 분별력 있게 구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지급사업의 차등보조율은 재정자주도와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을 함께 고려하여 40~90%의 구간에서 산정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격차가 크더라도 차등보조율 산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노인인구비율의 미세한 차이가 보조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의 인상보조율은 재정자주도의 큰 격차에 관계없이 사회복지비지수의 미세한 차이가 인상보조율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심지현, 2014).

다음으로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두 기준 중 재정자주도의 분류구간이 편중된 상황에서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인상보조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은 사회복지비지수 하나로 수렴된다. 그런데 사회복지비지수는 시·군보다 자치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 차등보조율 제도가 자치구에만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변질되어 운용되는 문제가 있다. 심지현(2014)의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차등보조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2년 사회복지비지수의 시·군·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비지수가 25% 이상인 자치단체는 시가 11개(15.1%), 군이 1개(1.2%)에 불과한 반면, 자치구는 65개(94.2%)로 대부분 사회복지비지수가 매우 높다. 따라서 자치구는 사회복지비지수가 높으므로 대부분이 인상보조율을 적용받게 된다.

자치구의 사회복지비지수가 시·군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재정지출의 구조가 시·군과 다르기 때문이다. 지역개발 등 다양한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군과 달리, 자치구는 「지방자치법」상 정책 자율성이 제한되어 자체사업 비중이 매우 낮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복지사업의 비중이 높아 사회복지비지수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다.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은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별표 2〉는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서 도시계획,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업무 등 14개 사무를 열거하고 있다. 시·군·자치구별 자체사업 및 사회복지 비중을 살펴보면, 자치구의 자체사업 비중은 시·군에 비하여 낮은 반면, 자치구의 사회복지 비중은 시·군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한편,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서울시는 지방에 비하여 30%p 낮은 기준보조율을 적용받으므로, 서울시 자치구에 대한 인상보조율은 사실상 낮은 기준보조율에 따른 부담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심지현, 2014).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체계의 문제점 중 하나는 현행 차등보조율제도가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차등보조율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① 차등보조율 선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적절성, ② 시·군·구간 재정구조 차이 미반영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①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적용한 차등보조율 구간 설정, ② 재정력지수, 실제 재정수요(수혜대상 인구) 등 새로운 차등보조율 선정기준 적용, ③ 시·군·구별 차등보조율 구간 설정, ④ 차등보조율제도 폐지 등이 제기되어 왔다(하능식, 2013; 이재원, 2016; 김정완, 2019 등).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19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주요 쟁점사항의 현황을 검토한 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차등보조율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3. 선행연구 검토

유영성·이원희(2005)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행 개별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사업 유형별 기준보조율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유형화를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수혜자를 기준으

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등으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기준보조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증섭·이동기(2011)는 국가 사무의 성격이 강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성, 전국적 형평성이 요구되는 국고보조사업(기초생활보장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장애수당 등)을 전액 국고보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내용의 동질성과 전국적인 형평성이 요구되는 사회복지시설(지역자활센터,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아동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에 대한 간접 경비의 지원은 국고보조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송상훈(2013)은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별로 상이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부담의 불공평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영유아보육사업의 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로 서울과 지방에 다른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성장촉진지역에는 별도로 더 높은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보육사업은 국가최소수준(national minimum)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국가의 재정책임성이 요구되나 다른 복지사업에 비해 보조율이 낮아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송상훈·류민정(2013)은 국가최소수준을 보장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이 50% 이하(전국적 파급효과를 지닌 50개 사업 가운데 32개 사업)로 설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사회복지사업은 국고보조율을 평균 75% 이상(기초노령연금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방세 확대를 통해 자체재원이 확충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중앙정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보육사업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업(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에 비해 보조율이 매우 낮고(평균 49%) 예산 증가속도가 빨라 자치단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서정섭(2016)은 중앙정부의 임의적인 기준보조율 조정에 따른 지방비 가중 문제에 주목하여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대상사업의 판단기준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없이 전국·통일적으로 계속 실시하는 연 지방비부담 2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판단기준으로 사업성격, 사업규모, 사업계속성 측면을 제시하였다. 이재원(2016)은 국고보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의제를 정리하였다. 첫째, 이 연구는 복지보조사업에서 기준보조율의 적정성과 체계성을 지적하였다. 복지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5%~100%까지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단계별 차이에 대한 유의미한 원칙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서울에 대한 복지사업의 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낮은 보조율을 적용하는 독특한 관행이 고착되었다고 지적했다. 둘째, 차등보조율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기초생활보장과 보육료지원사업에 대해 10% 인상보조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사회복지비 비중이 2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등보조율의 차등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셋째, 지자체 간의 경쟁적인 복지사업 확대를 우려해 새로운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재원(2019)은 국고보조금 구조조정 방안으로 정부 간 재정사업의 빅딜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는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상향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하향식 접근방식이다. 예를 들어, 복지사업 가운데 보육과 관련된 보조사업 5조원 규모를 지방으로 이양해 영유아보

육 기능을 지방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표 1〉 아동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내용
유영성·이원희 (2005)	-현행 개별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사업 유형별 기준보조율로 개편 -국고보조사업의 유형화를 법령에 규정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수혜자를 기준으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등으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기준보조율을 설정
이중섭·이동기 (2011)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한 국고보조사업(기초생활보장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장애수당 등)을 전액 국고보조로 전환 -사회복지시설(지역자활센터,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아동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송상훈 (2013)	-보육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송상훈·류민정 (2013)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평균 75% 이상(기초노령연금 수준)으로 상향 -보육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의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율 100% 적용
서정섭 (2016)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판단기준 제시
이재원 (2016)	-복지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5~100%까지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단계별 차이에 대한 유의미한 원칙이 없음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기초생활보장과 보육료지원사업에 대해 10% 인상보조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사회복지비 비중이 2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등보조율의 차등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재원 (2019)	-국고보조사업의 하향식 접근방법 제시 -예를 들어, 보육과 관련된 국고보조사업 5조원 규모를 지방으로 이양

### Ⅲ. 주요 쟁점사항 검토

#### 1. 산정기준의 적절성

현행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자주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를 대표하는 사회복지비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차등보조율의 산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분석 결과 2019년 차등보조율 산정을 위해 사용된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은 각각 65.0과 3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등보조율의 인상 구간을 결정하는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값이 각각 80.0 미만과 25.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인상보조율을 적용받도록 만들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7년 지역별 재정자주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분포는 다음과 같다.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2곳으로 충청남도 계룡시(81.44%)와 세종특별자치시 분청

(82.55%) 등이 있으며, 80% 이상 85% 미만인 곳은 2곳으로 서울특별시 본청(86.02%)과 경기도 과천시(88.05%)가 포함되어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36.84%), 경기도 광주시(79.48%) 등 23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는 8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10% 인상 보조율 적용 구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상보조율 단계 내 재정자주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0-79%에 86곳, 60-69%에 88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지역별 재정자주도와 차등보조율 분포(2017년 기준)

차등보조율 적용 단계	재정자주도		해당 지자체(개수)		
	단계별 범위	최대/최소값	서울	지방	합계
10% 이하보조율	85% 이상	86.02~89.67%	1	1	2
표준보조율	80~84%	81.44~82.55%	0	3	3
10% 인상 보조율	70~79%	36.84~79.48%	2	84	86
	60~69%		9	79	88
	50~59%		14	15	29
	40~49%		0	32	32
	30~39%		0	3	3
	30% 미만		0	0	0

2017년 지역별 사회복지비지수에 따른 차등보조율 분포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인 지자체는 43곳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군(20.04%), 강원도 본청(24.99%) 등이 있으며, 20% 이상~25% 미만인 곳은 59곳으로 경상북도 울릉군(7.87%), 강원도 홍천군(19.39%) 등을 포함한다. 경기도 양평군(25.17%), 광주광역시 북구(64.41%) 등 141곳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수는 2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비 지수 분포를 살펴보면, 지방과 다르게 서울시 기초단체 26곳 모두가 10% 인상 보조율 구간에 있다.

〈표 3〉 지역별 사회복지비지수와 차등보조율 분포(2017년 기준)

차등보조율 적용 단계	사회복지비지수		해당 지자체(수)		
	단계별 범위	최소/최대값	서울	지방	합계
10% 이하보조율	20% 미만	8.72~19.92%	0	59	59
표준보조율	20~24%	20.02~24.91%	0	43	43
10% 인상 보조율	25~29%	25.27~65.71%	0	26	26
	30~39%		3	42	45

지방자치단체를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10% 이하 보조율을 적용받는 재정자주도 85% 이상, 사회복지비 지수 20% 미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으며, 10% 이상 보조율을 적용받는 재정자주도 80% 미만, 사회복지비 지수 25% 이상에 해당하는 곳은 138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동작구, 경기도 이천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표 4〉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분류(2017년 기준)

구분		사회복지비 지수		
		20% 미만	20-25% 미만	25% 이상
재정자주도	85% 이상	0	0	2 (서울본청, 경기 과천시)
	80%-85 미만	0	2 (세종본청, 충남 계룡시)	1 (경기 안산시)
	80% 미만	59 (경북 영덕군, 전북 부안군, 전남 함평군 등)	41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여주시 등)	138 (서울 강남구, 서울 동작구, 경기 이천시 등)

다음으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가 차등보조율과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인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설정된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의 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수와 보조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와 아동수당 보조율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높은 보조율을 설정한다는 차등보조율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비지수와 아동수당 보조율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복지 관련 재정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높은 보조율을 설정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 차등보조율 산정기준과 보조율 간 상관관계

구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지수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0.097	0.027
아동수당	-0.200**	0.215**

다음으로 차등보조율 산정기준과 실제 국고보조금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자주도는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비지수의 경우에는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6〉 차등보조율 산정기준과 국고보조금 간 상관관계

구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지수
영유아보육료	-0.129	0.434**
아동수당	-0.147*	0.478**
가정양육수당	-0.142*	0.473**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재정자주도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의 보조율 및 국고보조금과 연계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비지수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의 보조율과 상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이외의 차등보조율 산정기준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10% 인상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등보조율을 폐지하고 기준보조율을 10% 인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였다.

## 2. 시·군·구의 구분 필요성

현행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은 시·군·구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시·군·구간에는 세입·세출구조, 인구구조 등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 여건에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에는 세입 여건이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대도시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복지 관련 세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차등보조율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에 대한 시·군·구별 비교·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을 구분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파악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재정자주도의 경우 시·군은 각각 71.3과 69.4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자치구는 52.8로 시·군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지수의 경우에도 시·군은 각각 29.7과 18.7로 유사한 반면, 자치구는 51.1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분산분석을 통해 시·군·구 간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의 여부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자주도는 시·군·구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Scheffe 검정)을 통한 집단구분 결과 **시·군이 하나의 집단, 자치구가 다른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즉, 재정자주도 측면에서 시와 군은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자치구는 시·군과 다른 집단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회복지비지수의 경우에도 시·군·구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Scheffe 검정)을 통한

집단구분 결과 시·군·구가 모두 다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표 7〉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차등보조율 산정기준 차이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구분
재정 자주도	시	75	71.3241	5.12344	184.399**	2
	군	82	69.3929	3.81880		2
	자치구	69	52.8261	9.25947		1
사회복지비 지수	시	75	29.6925	6.56962	508.325**	2
	군	82	18.7066	4.23653		1
	자치구	69	51.1036	7.80178		3

차등보조율 적용 단계를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특·광역시와 도간 차이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의 경우, 5곳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인상 보조율을 적용받지만, 도의 경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표준보조율을 적용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경기의 경우, 타 도와 다르게 표준보조율보다 인상보조율을 적용받는 기초자치단체가 많다.

〈표 8〉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분류(2017년 기준)

구분	차등보조율 적용 단계		
	인하	표준	인상
서울특별시	0	1	25
부산광역시	0	0	17
대구광역시	0	0	9
인천광역시	0	2	9
광주광역시	0	0	6
대전광역시	0	0	6
울산광역시	0	1	5
세종특별자치시	0	1	0
경기도	0	4	28
강원도	0	14	5
충청북도	0	8	4
충청남도	0	13	3
전라북도	0	11	4
전라남도	0	19	4
경상북도	0	18	6

시군구로 나눠 살펴보면, 시군구에 따른 적용보조율에 차이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경우, 82곳 중 76곳이 표준보조율에 해당하지만, 반대로 모든 자치구는 인상보조율에 해당한다.

〈표 9〉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분류(2017년 기준)

구분	차등보조율 적용 단계		
	인하	표준	인상
특·광역시	0	2	6
도	0	2	7
시	0	25	50
군	0	76	6
구	0	0	69
계	0	105	138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를 적용하여 차등보조율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에는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모두에서 시·군과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시·군과 자치구는 구분하여 차등보조율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차등보조율 산정에 있어서 시·군과 자치구를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IV. 시나리오 분석결과

### 1. 대안 및 평가기준 설정

#### 1) 대안 설정

선행연구 검토와 현황분석 등을 통해 제시될 수 있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관련 쟁점은 ① 현행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의 적절성, ② 시·군과 자치구 간 동일 기준 적용의 적절성, ③ 차등보조율제도 자체의 적절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3가지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현행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영유아보육료사업과 아동수당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총액과 수혜자 1인당 금액을 기준으로 재원확충 효과와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파악하였다.

먼저 시나리오 1은 기존 차등보조율의 구간설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즉, 차등보조율 선정기준인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를 사용하여 차등보조 구간을 설정하는 대신, 시·군과 자치구를 구분하여 각각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차등보조 구간을 설정하는 방안

이다. 시나리오 2는 현행 차등보조율 선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대신 영유아인구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차등보조율 선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와 상관관계분석 등을 통해 영유아인구비율을 새로운 선정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현행 차등보조율 선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를 대신하여 영유아인구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시나리오 1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26개 시·군·구 영유아인구비율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3단계 차등보조율 구간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9년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선정기준인 2017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지수, 영유아 인구비율을 사용하여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를 검토하였다. 영유아인구비율의 경우 전국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시나리오 1의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는 시·군과 자치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시나리오 2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차등보조율의 경우 각각의 평균에서  $\pm 1$ 표준편차<sup>3)</sup>를 기준으로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영유아인구비율,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지수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10〉 영유아인구비율,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지수의 기술통계

구분	영유아인구비율(2017)				재정자주도(2017)				사회복지비지수(2017)			
	평균	표준편차	인상	인하	평균	표준편차	인상	인하	평균	표준편차	인상	인하
전국	0.0439	0.0125	0.0564	0.0314								
시·군	0.0432	0.0131	0.0564	0.0301	70.32	4.58	65.74	74.89	23.95	7.75	31.71	16.20
구	0.0455	0.0109	0.0564	0.0346	52.83	9.26	43.57	62.09	51.10	7.80	58.91	43.30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3은 차등보조율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기준보조율을 10%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행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차등보조율의 적용을 통해 대부분의 시·군·구가 10%씩 인상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차등보조율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차등보조율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보조율을 1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표 11〉 분석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

구분	특징	주요 내용
시나리오 1	차등보조 구간설정 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과 자치구로 지방자치단체 유형 구분</li> <li>·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차등보조율 구간 설정</li> </ul>

3) 표준정규분포를 가정할 경우 1표준편차 이내에 68.3%가 포함된다.

## 2) 평가기준 설정

이 연구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재원확충 효과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기준으로 대안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재원확충 효과는 시나리오별 국비 지원 규모(총액,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증감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체계의 조정으로 인해 국비 지원 규모가 현행보다 지나치게 많이 감소하는 시·군·구가 없도록 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measure)의 증감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226개 전체 시·군·구 및 개별 시·도 내의 시·군·구에서의 형평화계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의 현행 대비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별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니계수, 변이계수, 엔트로피를 활용하였다.

먼저, 지니계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불평등의 단일척도로, 특정 변수의 분포를 동등성을 나타내는 균일 분포와 비교하는 누적빈도 곡선인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을 기반으로 한다. 지니계수는 균등분배가 행해진 것을 나타내는 선(균등선)과 로렌츠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A)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삼각형 면적(B)을 대비시킨 비율로, 값은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된다.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완전평등을 의미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Gini = \frac{A}{B} = \frac{\text{불평등면적}}{\text{삼각형 } ABC \text{ 면적}}$$

다음으로 변이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수치를 의미하며, 상대적인 산포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다. 변이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평균값에 밀집되어 있고, 클수록 흩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변이계수는 표준편차와 전체 평균만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의 편리성을 갖추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남수경, 2007; 홍근석 외, 2016). 마지막으로 엔트로피 또한 불평등의 척도 중 하나로 일반 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때  $\bar{y}$  는 평균 임금(혹은 1인당 지출)을 의미한다.

$$GE(\alpha) = \frac{1}{\alpha(\alpha-1)} \left[ \frac{1}{N} \sum_{i=1}^N \left( \frac{y_i}{\bar{y}} \right)^\alpha - 1 \right]$$

GE 값은 0과 무한대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며, 0은 동일한 분포를 나타내고, 값이 커질수록 더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alpha$ 는 소득 분배의 다른 부분에서 소득 간의 거리에 주어질 가중치를 나타내는데, 어떤 실제 값도 취할 수 있다.  $\alpha$  값이 낮으면 GE는 하단 분포의 변화에 더 민감하고, 높은 경우에는 상단 분포의 변화에 더 민감하다. 가장 일반적인  $\alpha$  값은 0, 1 또는 2로, 본 연구에서

는 Theil's L 또는 평균대수편차(mean log deviation measure)라고 불리는  $\alpha$  값이 0인 GE(0)일 때의 공식을 활용하여 형평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GE(0) = \frac{1}{N} \sum_{i=1}^N \ln\left(\frac{y_i}{y}\right)$$

## 2. 대안별 분석결과

### 1) 시나리오 1의 분석결과

#### (1) 영유아보육료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시나리오 1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측면에서 시나리오 1을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98,689백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충남, 전북,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행보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85,924백만 원)과 경기(69,283백만 원) 지역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은 134.24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대전(258.29원)과 서울(232.26원)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영유아보육료(국비)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

(단위: 백만원, 원)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총액)	국비(영유아 1인당)	국비(총액)	차액	국비(영유아 1인당)	차액
서울	348,896	943.12	262,972	-85,924	710.86	-232.26
부산	203,888	1,520.50	187,165	-16,723	1,395.79	-124.71
대구	155,595	1,512.82	139,391	-16,204	1,355.27	-157.55
인천	216,635	1,626.10	186,142	-30,493	1,397.21	-228.88
광주	127,008	1,883.86	114,651	-12,357	1,700.57	-183.29
대전	128,442	1,937.17	111,316	-17,126	1,678.88	-258.29
울산	92,612	1,601.67	82,035	-10,577	1,418.75	-182.92
경기	1,015,560	1,559.35	946,277	-69,283	1,452.97	-106.38
강원	91,744	1,552.46	87,113	-4,631	1,474.09	-78.37
총합	123,076	1,734.98	111,963	-11,113	1,578.32	-156.66

다음으로 시나리오 1을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는 현행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226개 전체 시·군·구의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는 각각 0.0291, 0.1664, 0.0473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1을 적용할 경우 변이계수는 0.0301(0.0010), 지니계수는 0.1716(0.0052), 엔트로피는 0.0541(0.0069)로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 간 형평화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시·군·구 간 차이가 증가하는 지역이 3-5개이며, 차이가 감소하는 지역이 7-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전, 충남, 전북 등은 시·군·구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영유아보육료(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시나리오 1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변이계수	차이	지니계수	차이	엔트로피	차이
서울	0.0149	0.0825	0.0110	0.0225	0.0076	0.1232	0.0407	0.0278	0.0167
부산	0.0139	0.0756	0.0091	0.0182	0.0043	0.0994	0.0238	0.0153	0.0061
대구	0.0217	0.0918	0.0170	0.0214	-0.0003	0.0971	0.0052	0.0172	0.0002
인천	0.0281	0.1351	0.0417	0.0242	-0.0039	0.1188	-0.0163	0.0286	-0.0131
광주	0.0157	0.0778	0.0103	0.0165	0.0008	0.0756	-0.0022	0.0118	0.0015
대전	0.0061	0.0270	0.0014	0.0061	0	0.0270	0	0.0014	0
울산	0.0139	0.0674	0.0083	0.0096	-0.0043	0.0468	-0.0206	0.0038	-0.0046
경기	0.0149	0.0652	0.0113	0.0142	-0.0007	0.0617	-0.0035	0.0096	-0.0017
강원	0.0247	0.1345	0.0280	0.0202	-0.0045	0.1118	-0.0227	0.0198	-0.0082
충북	0.0229	0.1223	0.0237	0.0199	-0.0030	0.1082	-0.0141	0.0189	-0.0048
충남	0.0149	0.0803	0.0105	0.0149	0	0.0803	0	0.0105	0
전북	0.0379	0.2079	0.0801	0.0379	0	0.2079	0	0.0801	0
전남	0.0384	0.2048	0.0663	0.0384	0	0.2049	0.0001	0.0663	0.0001
경북	0.0396	0.2080	0.0822	0.0370	-0.0026	0.1942	-0.0138	0.0758	-0.0064
경남	0.0248	0.1365	0.0299	0.0235	-0.0013	0.1292	-0.0074	0.0274	-0.0025
전국	0.0291	0.1664	0.0473	0.0301	0.0010	0.1716	0.0052	0.0541	0.0069

## (2) 아동수당

아동수당에 대한 시나리오 1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재원확충 측면에서 시나리오 1을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259,091백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1을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은 모든 지역에서 현행보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79,448백만 원)와 서울(54,347백만 원)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수당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은 97.59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모든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123.81원)과 충북(120.18원)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아동수당(국비)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

(단위: 백만원, 원)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총액)	국비(영유아 1인당)	국비(총액)	차액	국비(영유아 1인당)	차액
서울	289,297	659.04	234,950	-54,347	535.23	-123.81
부산	139,222	870.37	127,269	-11,953	795.65	-74.72
대구	106,930	870.07	95,447	-11,483	776.63	-93.43
인천	138,238	870.22	119,944	-18,294	755.05	-115.16
광주	70,630	869.49	64,529	-6,101	794.38	-75.10
대전	70,126	882.68	61,363	-8,763	772.38	-110.30
울산	58,071	842.55	51,320	-6,751	744.60	-97.95
경기	624,718	804.42	545,270	-79,448	702.12	-102.30
강원	55,587	787.61	49,371	-6,216	699.54	-88.07
충북	70,287	831.49	60,128	-10,159	711.31	-120.18
충남	91,133	765.90	84,623	-6,509	711.19	-54.71
전북	73,281	842.45	68,541	-4,740	787.96	-54.49
전남	70,624	783.01	65,717	-4,907	728.60	-54.41
경북	106,909	810.89	93,871	-13,038	712.00	-98.89
경남	148,001	800.36	131,618	-16,382	711.77	-88.59
전국	2,113,053	795.90	1,853,962	-259,091	698.31	-97.59

다음으로 시나리오 1을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는 현행 보다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226개 전체 시·군·구의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는 각각 0.0089, 0.0495, 0.00401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1을 적용할 경우 변이계수는 0.0110(0.0021), 지니계수는 0.0539(0.0044), 엔트로피는 0.0069(0.0028)로 나타났다. 한편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 간 형평화 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북, 전남 등 7개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시·군·구 간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등 6개 지역에서는 시·군·구 간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아동수당(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시나리오 1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변이계수	차이	지니계수	차이	엔트로피	차이
서울	0.0034	0.019	0.00055	0.0103	0.00690	0.0510	0.03197	0.0056	0.00505

경기	0.0075	0.0331	0.00268	0.0039	-0.00360	0.0149	-0.01824	0.0007	-0.00197
강원	0.0052	0.0265	0.00126	0.0025	-0.00270	0.0133	-0.01316	0.0003	-0.00097
충북	0.0050	0.0226	0.00107	0.0024	-0.00260	0.0122	-0.01039	0.0003	-0.00082
충남	0.0017	0.0085	0.00014	0.0017	0	0.0085	0.00003	0.0001	0
전북	0.0061	0.0302	0.00165	0.0065	0.00040	0.0319	0.00171	0.0019	0.00023
전남	0.0059	0.0327	0.00167	0.006	0.00010	0.0331	0.00036	0.0017	0.00004
경북	0.0050	0.0235	0.00114	0.0038	-0.00120	0.0168	-0.00670	0.0007	-0.00040
경남	0.0038	0.0172	0.00066	0.002	-0.00180	0.0108	-0.00640	0.0002	-0.00047
전국	0.0089	0.0495	0.00401	0.011	0.00210	0.0539	0.00442	0.0069	0.00285

## 2) 시나리오 2의 분석결과

## (1) 영유아보육료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시나리오 2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측면에서 시나리오 2를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84,738백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모든 지역에서 현행보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76,637백만 원)과 경기(47,281백만 원) 지역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은 127.97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광주(251.18원)와 인천(216.98원)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영유아보육료(국비)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2

(단위: 백만원, 원)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총액)	국비(영유아 1인당)	국비(총액)	차액	국비(영유아 1인당)	차액
서울	348,896	943.12	272,259	-76,637	735.96	-207.16
부산	203,888	1,520.50	179,534	-24,354	1,338.88	-181.62
대구	155,595	1,512.82	133,779	-21,815	1,300.71	-212.11
인천	216,635	1,626.10	187,728	-28,907	1,409.12	-216.98
광주	127,008	1,883.86	110,074	-16,934	1,632.68	-251.18
대전	128,442	1,937.17	116,851	-11,591	1,762.35	-174.81
울산	92,612	1,601.67	81,201	-11,411	1,404.32	-197.35
경기	1,015,560	1,559.35	968,279	-47,281	1,486.75	-72.60
강원	91,744	1,552.46	86,169	-5,575	1,458.12	-94.33
충북	123,076	1,734.98	111,045	-12,031	1,565.38	-169.60
충남	157,219	1,578.23	160,408	3,189	1,610.25	32.02

다음으로 시나리오 2를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는 현행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226개 전체 시·군·구의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는 각각 0.0291, 0.1664, 0.0473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를 적용할 경우 변이계수는 0.0325(0.0034), 지니계수는 0.1861(0.0197), 엔트로피는 0.0550(0.0077)로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 간 형평화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시·군·구 간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구와 경기의 경우에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영유아보육료(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시나리오 2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변이계수	차이	지니계수	차이	엔트로피	차이
서울	0.0149	0.0825	0.0110	0.0206	0.0057	0.1120	0.0295	0.0260	0.0150
부산	0.0139	0.0756	0.0091	0.0179	0.0040	0.0971	0.0215	0.0091	0
대구	0.0217	0.0918	0.0170	0.0159	-0.0058	0.0810	-0.0108	0.0170	0
인천	0.0281	0.1351	0.0417	0.0287	0.0006	0.1371	0.0020	0.0303	-0.0114
광주	0.0157	0.0778	0.0103	0.0157	0	0.0778	0	0.0103	0
대전	0.0061	0.0270	0.0014	0.0068	0.0007	0.0325	0.0055	0.0014	0
울산	0.0139	0.0674	0.0083	0.0191	0.0052	0.0946	0.0272	0.0038	-0.0046
경기	0.0149	0.0652	0.0113	0.0126	-0.0023	0.0529	-0.0123	0.0087	-0.0026
강원	0.0247	0.1345	0.0280	0.0252	0.0005	0.1403	0.0058	0.0198	-0.0082
충북	0.0229	0.1223	0.0237	0.0263	0.0034	0.1431	0.0208	0.0189	-0.0048
충남	0.0149	0.0803	0.0105	0.0249	0.0100	0.1314	0.0511	0.0105	0
전북	0.0379	0.2079	0.0801	0.0389	0.0010	0.2121	0.0042	0.0676	-0.0125
전남	0.0384	0.2048	0.0663	0.0404	0.0020	0.2170	0.0122	0.0610	-0.0053
경북	0.0396	0.2080	0.0822	0.0443	0.0047	0.2316	0.0236	0.0715	-0.0107
경남	0.0248	0.1365	0.0299	0.0325	0.0077	0.1779	0.0414	0.0274	-0.0025
전국	0.0291	0.1664	0.0473	0.0325	0.0034	0.1861	0.0197	0.0550	0.0077

(2) 아동수당

아동수당에 대한 시나리오 2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재원확충 측면에서 시나리오 2를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308,183백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를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은 모든 지역에서 현행보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75,927백만 원)와 서울(61,543백만 원)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수당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은 116.08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모든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157.23원)과 대전(144.38원)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아동수당(국비)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2

(단위: 백만원, 원)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총액)	국비(영유아 1인당)	국비(총액)	차액	국비(영유아 1인당)	차액
서울	289,297	659.04	227,754	-61,543	518.84	-140.20
부산	139,222	870.37	117,419	-21,803	734.06	-136.31
대구	106,930	870.07	89,458	-17,472	727.91	-142.16
인천	138,238	870.22	119,963	-18,275	755.17	-115.04
광주	70,630	869.49	61,985	-8,646	763.06	-106.43
대전	70,126	882.68	58,655	-11,471	738.29	-144.38
울산	58,071	842.55	50,633	-7,438	734.63	-107.91
경기	624,718	804.42	548,791	-75,927	706.66	-97.77
강원	55,587	787.61	46,926	-8,661	664.89	-122.72
충북	70,287	831.49	59,464	-10,823	703.45	-128.04
충남	91,133	765.90	82,075	-9,058	689.77	-76.12
전북	73,281	842.45	59,605	-13,676	685.22	-157.23
전남	70,624	783.01	62,726	-7,899	695.44	-87.57
경북	106,909	810.89	89,952	-16,957	682.28	-128.62
경남	148,001	800.36	129,465	-18,535	700.12	-100.24
전국	2,113,053	795.90	1,804,871	-308,183	679.82	-116.08

다음으로 시나리오 2를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는 현행 보다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226개 전체 시·군·구의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는 각각 0.0089, 0.0495, 0.00401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를 적용할 경우 변이계수는 0.0128(0.0039), 지니계수는 0.0708(0.0212), 엔트로피는 0.0087(0.0046)로 나타났다. 한편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 간 형평화 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시·군·구 간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아동수당(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시나리오 2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변이계수	차이	지니계수	차이	엔트로피	차이
서울	0.0034	0.019	0.00055	0.0121	0.0087	0.0655	0.04649	0.0073	0.00671
부산	0.0033	0.0172	0.00053	0.0096	0.0063	0.0522	0.03501	0.0043	0.00374

강원	0.0052	0.0265	0.00126	0.0097	0.0045	0.0514	0.02490	0.0044	0.00313
충북	0.0050	0.0226	0.00107	0.0091	0.0041	0.0473	0.02468	0.0039	0.00280
충남	0.0017	0.0085	0.00014	0.0097	0.0080	0.0490	0.04047	0.0043	0.00416
전북	0.0061	0.0302	0.00165	0.0088	0.0027	0.0433	0.01312	0.0034	0.00178
전남	0.0059	0.0327	0.00167	0.0083	0.0024	0.0462	0.01354	0.0034	0.00170
경북	0.0050	0.0235	0.00114	0.0083	0.0033	0.0413	0.01776	0.0032	0.00203
경남	0.0038	0.0172	0.00066	0.0089	0.0051	0.0469	0.02967	0.0037	0.00305
전국	0.0089	0.0495	0.00401	0.0128	0.0039	0.0708	0.02128	0.0087	0.00466

### 3) 시나리오 3의 분석결과

#### (1) 영유아보육료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시나리오 3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측면에서 시나리오 3을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170,350백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지역에서 현행보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70,614백만 원)와 경남(26,006백만 원) 지역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은 현행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은 76.56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충남(242.81원)과 전남(179.59원)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영유아보육료(국비)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3

(단위: 백만원, 원)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총액)	국비(영유아 1인당)	국비(총액)	차액	국비(영유아 1인당)	차액
서울	348,896	943.12	348,896	0	943.12	0.00
부산	203,888	1,520.50	203,888	0	1,520.50	0.00
대구	155,595	1,512.82	155,595	0	1,512.82	0.00
인천	216,635	1,626.10	216,967	332	1,628.59	2.49
광주	127,008	1,883.86	127,008	0	1,883.86	0.00
대전	128,442	1,937.17	128,442	0	1,937.17	0.00
울산	92,612	1,601.67	94,656	2,044	1,637.02	35.35
경기	1,015,560	1,559.35	1,086,174	70,614	1,667.78	108.42
강원	91,744	1,552.46	100,515	8,771	1,700.87	148.42
충북	123,076	1,734.98	129,188	6,112	1,821.13	86.15
충남	157,219	1,578.23	181,407	24,188	1,821.04	242.81

다음으로 시나리오 3을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는 현행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226개 전체 시·군·구의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는 각각 0.0291, 0.1664, 0.0473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3을 적용할 경우 변이계수는 0.0274(-0.0017), 지니계수는 0.1563(-0.0101), 엔트로피는 0.0427(-0.0046)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 간 형평화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시·군·구 간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남 등 6개 지역은 시·군·구 간 차이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영유아보육료(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시나리오 3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변이계수	차이	지니계수	차이	엔트로피	차이
서울	0.0149	0.0825	0.0110	0.0149	0	0.0825	0	0.0110	0
부산	0.0139	0.0756	0.0091	0.0139	0	0.0756	0	0.0091	0
대구	0.0217	0.0918	0.0170	0.0217	0	0.0918	0	0.0170	0
인천	0.0281	0.1351	0.0417	0.0248	-0.0033	0.1226	-0.0125	0.0303	-0.0114
광주	0.0157	0.0778	0.0103	0.0157	0	0.0778	0	0.0103	0
대전	0.0061	0.0270	0.0014	0.0061	0	0.0270	0	0.0014	0
울산	0.0139	0.0674	0.0083	0.0096	-0.0043	0.0468	-0.0206	0.0038	-0.0046
경기	0.0149	0.0652	0.0113	0.0135	-0.0014	0.0582	-0.0070	0.0087	-0.0026
강원	0.0247	0.1345	0.0280	0.0202	-0.0045	0.1118	-0.0227	0.0198	-0.0082
충북	0.0229	0.1223	0.0237	0.0199	-0.0030	0.1082	-0.0141	0.0189	-0.0048
충남	0.0149	0.0803	0.0105	0.0149	0	0.0803	0	0.0105	0
전북	0.0379	0.2079	0.0801	0.0341	-0.0038	0.1824	-0.0255	0.0676	-0.0125
전남	0.0384	0.2048	0.0663	0.0361	-0.0023	0.1959	-0.0089	0.0610	-0.0053
경북	0.0396	0.2080	0.0822	0.0364	-0.0032	0.1909	-0.0171	0.0715	-0.0107
경남	0.0248	0.1365	0.0299	0.0235	-0.0013	0.1291	-0.0074	0.0274	-0.0025
전국	0.0291	0.1664	0.0473	0.0274	-0.0017	0.1563	-0.0101	0.0427	-0.0046

## (2) 아동수당

아동수당에 대한 시나리오 3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재원확충 측면에서 시나리오 3을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100,953백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3을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은 모든 지역에서 현행보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43,285백만 원)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수당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은 38.02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모든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109.41원)과 전남(94.97원)의 1인당 금액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아동수당(국비)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3

(단위: 백만원, 원)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총액)	국비(영유아 1인당)	국비(총액)	차액	국비(영유아 1인당)	차액
서울	289,297	659.04	289,335	38	659.12	0.09
부산	139,222	870.37	139,226	4	870.40	0.03
대구	106,930	870.07	106,933	4	870.10	0.03
인천	138,238	870.22	138,536	297	872.09	1.87
광주	70,630	869.49	70,840	209	872.07	2.58
대전	70,126	882.68	70,129	3	882.72	0.04
울산	58,071	842.55	59,422	1,351	862.15	19.60
경기	624,718	804.42	668,003	43,285	860.16	55.74
강원	55,587	787.61	60,764	5,177	860.97	73.36
충북	70,287	831.49	74,004	3,717	875.46	43.97
충남	91,133	765.90	104,151	13,019	875.31	109.41
전북	73,281	842.45	75,873	2,592	872.24	29.79
전남	70,624	783.01	79,191	8,566	877.98	94.97
경북	106,909	810.89	115,608	8,699	876.88	65.98
경남	148,001	800.36	161,992	13,991	876.02	75.66
전국	2,113,053	795.90	2,214,006	100,953	833.93	38.02

다음으로 시나리오 3을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는 현행 보다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226개 시·군·구의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는 각각 0.0089, 0.0495, 0.00401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3을 적용할 경우 변이계수는 0.0086(-0.0003), 지니계수는 0.0392(-0.0103), 엔트로피는 0.0042(0.0001)로 나타났다. 한편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 간 형평화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시·군·구 간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아동수당(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시나리오 3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변이계수	차이	지니계수	차이	엔트로피	차이
서울	0.0034	0.019	0.00055	0.0034	0	0.0193	0.0003	0.0006	0.00002
부산	0.0033	0.0172	0.00053	0.0033	0	0.0172	0	0.0005	0

강원	0.0052	0.0265	0.00126	0.0025	-0.0027	0.0133	-0.0132	0.0003	-0.00097
충북	0.005	0.0226	0.00107	0.0024	-0.0026	0.0122	-0.0104	0.0003	-0.00082
충남	0.0017	0.0085	0.00014	0.0017	0	0.0085	0	0.0001	0
전북	0.0061	0.0302	0.00165	0.0021	-0.0040	0.0111	-0.0191	0.0002	-0.00144
전남	0.0059	0.0327	0.00167	0.0053	-0.0006	0.0293	-0.0034	0.0014	-0.00031
경북	0.005	0.0235	0.00114	0.0022	-0.0028	0.0115	-0.0120	0.0002	-0.00091
경남	0.0038	0.0172	0.00066	0.002	-0.0018	0.0108	-0.0064	0.0002	-0.00047
전국	0.0089	0.0495	0.00401	0.0086	-0.0003	0.0392	-0.0103	0.0042	0.00017

##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와 현황분석 등을 통해 3가지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구간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시·군과 자치구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분하여 차등보조율 구간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현행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대신 영유아인구비율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차등보조율 구간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10% 인상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행 차등보조율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시·군·구의 기준보조율을 10% 인상하여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3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재원확충 측면에서 국고보조금 총액과 수혜자 1인당 금액의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지역 간 격차 완화 측면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형평화계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원확충 측면에서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는 현행보다 국비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인상보조율 구간에 속하고 있는 현행 차등보조율 설정기준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기준으로 226개 시·군·구 중 131개가 인상보조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인하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는 시·군·구는 0개이다. 즉, 현재의 차등보조율 설정기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관대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행 차등보조율제도 하에서 구간설정 방식이나 기준을 조정하여 차등보조 구간을 현실화할 경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보다 국비의 지원 규모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차등보조율제도의 조정을 위해서는 기준보조율의 인상을 동시에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시나리오 3은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모두 현행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현재의 국고보조금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준보조율을 1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재정형평화 측면에서 시나리오 1과 2는 현행보다 지역 간 격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개 시나리오 모두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가 현재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도 현재 다수의 시·군·구가 인상보조율 구간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개의 시나리오 모두 현

행 차등보조율 설정기준보다는 엄격하게 구간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군·구 간 국비 지원 금액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게 된다. 반면, 시나리오 3에서는 변이계수와 지니계수 값은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모두 감소한 반면, 엔트로피 값은 아동수당에서 현행 보다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과 재정형평화 측면에서 볼 때, 시나리오 3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시나리오 3의 경우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모두 현행보다 국비 지원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보다 국비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나리오 3의 경우 대부분의 형평화계수가 현재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나리오 3의 경우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에 대한 수혜자 1인당 국비 지원 규모에 있어서 226개 시·군·구 간 차이뿐만 아니라 개별 시·도 내의 시·군·구 간 차이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재원분담체계 내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은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에 대한 현행 차등보조율제도를 폐지하고 기준보조율을 1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즉, 현재 복잡하게 설계되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현재보다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는 현실적 대안은 차등보조율제도를 폐지하고 기준보조율을 10%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 현행보다 국비 지원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 3을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의 국비 지원 규모는 현행보다 170,350백만원 증가하며, 아동수당은 100,953백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정양육수당의 국비 증가분을 고려하면 약 3,000억원 정도의 국비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유아보육 사업들을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중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사업인 3개 사업(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는 5,373억 원 정도이다. 따라서 이들 10개 사업 중 일부를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현금성 지원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인상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 시나리오 분석결과의 종합

구분	시나리오 1 (재정자주도/사회복지비지수 기준, 시군-자치구 평균/표준편차 구분)	시나리오 2 (영유아인구비율 기준, 226개 평균/표준편차)	시나리오 3 (차등보조율 폐지, 기준보조율 10% 인상)

## 참고문헌

- 김정완. (2019).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도의 재정적 형평화와 효율화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4(3): 199-233.
- 남수경. (2007).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의 형평성 평가. 「교육재정경제연구」, 16(1): 31-56.
- 서정섭. (2016). 국고보조금사업 기준보조율의 법정화에 관한 연구: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정의와 법령화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7-229.
- 손인호·김재덕. (2018).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의 적용 실태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2(3): 283-308.
- 송상훈. (2013). 국고보조금제도가 변해야 재정이 산다. 경기연구원, 「이슈 & 진단」, (122): 1-24.
- 송상훈·류민정. (2013).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조정방안.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 심지현. (2014).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유영성·이원희. (2005). 국고보조금 운영의 개선 방안: 광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423-443.
- 이원희. (2015). 지방자치 확대 위해 국고보조금 축소해야. 「월간 공공정책」, 121: 68-70.
- 이재원. (2016). 국고보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의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31-53.
- 이재원. (2019).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편과제. 「한국지방재정논집」, 24(1): 33-64.
- 이재원·김진·김은정·오영삼·박혜경. (2017). 「복지재정 운영체계 분석연구」. 한국사회서비스연구원.
- 이중섭·이동기. (2011). 시·군별 복지재정 격차, 국고보조금사업 재정비 통해 완화해야. 「Jthink」, Issue Briefing, (47).
- 장경원·홍근석. (2018). 인구구조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자치단체 세출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157-177.
- 하능식. (2013). 지방 사회복지 보조금제도 개편과제: 국고보조율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3): 35-62.
- 홍근석. (2020).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자원분담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홍근석·장경원·김종순. (2016). 학력인구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21(3): 153-178.

홍근석(洪權碩): 건국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재정·지방분권·지방자치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2020), 무조건부 보조금의 끈끈이 효과에 관한 분석(2020),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제수도 이주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2020) 등이 있다(hong0582@krila.re.kr).

임정빈(任正彬): 건국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갈등관리, 조직성과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정부 비대면 업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업무시스템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2020),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 네트워크분석”(2020),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확보방안 연구”(2019),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한 고향 사랑기부제도의 도입효과 분석”(2019) 등이 있다(jbyim@sungkyul.ac.kr).

## Abstract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System for the Social Welfare National Subsidy Program: Focusing on Infant Care-Education Fees and Child Allowances

Hong, Geun Seok

Yim, Jeong Bin

This study focuses on the child welfare national subsidy program, and aims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for the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source sharing plan for the Korean social welfare subsidy program. In particular, among the social welfare government subsidy programs, two projects, such as infant care-education fees and child allowances, are important and have a large scale of subsidy for social welfare, and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system for social welfare subsidy programs were deriv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n alternative that all local governments can satisfy within the current financial resource sharing system is a plan to abolish the current differential subsidy rate system for infant care-education, home care allowance, and child allowance and increase the standard subsidy rate by 10%. However, in this case, the scale of government funding increases. Therefore, among the government subsidy programs in the field of child welfare, a portion of 10 projects excluding the representative cash-based support project will be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 Through this, government funds should be secured as necessary to increase the standard subsidy rate for cash-based support projects.

**Key Words:** Differential rate of the subsidy, Social welfare national subsidy program, Standard Rate of National Subsidy, Infant care-education fees, child allowances